

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정수조례 폐지조례안

☐ 폐지 이유

- 동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, 동법시행령에서 시장·군수에 위임된 가스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
- '99. 7. 1.자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☐ 검토 내용

- 동 조례는 조례에서 정한 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·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견사항 또한 없음.